



비눗방울액



01

제품에 대하여

- 시판되고 있는 비눗방울액은 음이온·비이온 계면활성제와 미량의 증점제, 물을 함유한다.
-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, 수입·제조사명,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(「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」 제25조 제2항 별표3).
- 가정에서 만드는 비눗방울액은 세제류(식기용·세탁용 세제, 비누, 샴푸 등)를 희석한 것이다. 폴리비닐알코올(PVA)을 함유한 세탁풀이나 글리세린, 검 시럽 등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.



경구 노출

- 입 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 후, 유제품 또는 물을 마시게 한다.
- 얼굴, 손발, 옷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샤워 등으로 전신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.



즉시 진료

- 여러 번 구토하고 목 통증, 구역질 등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,
-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고 호흡기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

경과 관찰 핏거나 한 모금 마신 정도로 목 통증, 구역질, 구강의 위화감 등 가벼운 소화기 증상 정도인 경우



흡입한 경우

- 제품 특성상 흡입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.



눈에 들어간 경우

-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눈을 씻는다.

즉시 진료 눈 뜨기 어려운 경우,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와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

만약을 위한 진료 눈을 씻은 후에도 통증, 충혈이 있는 경우



피부 노출

만약을 위한 진료 물로 씻은 후에도 발적, 통증, 발진이 있는 경우



- 비눗방울액은 약한 소화기 자극물로 분류되므로 소량 섭취 시에는 영향이 없고, 있다 하더라도 미약하다.
- 시판되고 있는 비눗방울액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낮고 독성은 낮다.

가정에서의 응급처치



경구

- ① **제거** : 입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뱉게 한다.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 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.
- ② **헹굼** : 물로 입을 헹구고 가글한다.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.
- ③ **수분 섭취** : 유제품(우유나 요구르트) 또는 물을 마시게 한다. 마시는 양은 보통 마시는 정도(120~240mL, 소아는 체중 1kg당 15mL 이하, 억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)이다.
【이유】단백질에 의한 점막 보호나 희석에 의해 자극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.



눈

-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물로 씻는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,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.



피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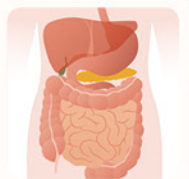
- ① **제거** :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.
부착된 옷은 벗는다.
- ② **세척** : 물로 충분히 씻는다.



체내 동태

계면활성제

- 【흡수】 분자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, 기본적으로 소화관에서 흡수된다.
- 【대사·배설】 간장에서 대사된 후,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설된다.





국외(일본중독정보센터) 사고사례

연간 건수 약 230여 건(일반 96%, 의료기관 2%, 기타 2%)

환자 연령층 1세 미만 4%, 1~5세 95%, 기타·불명 1%

사고 상황 소아의 잘못된 섭취 등 98%(비눗방울액 용기에 입을 대고 직접 마신 경우, 빨대 끝을 핥은 경우, 잘 볼지 못하고 들이마신 경우, 용기가 넘어서서 비눗방울액이 얼굴에 묻은 경우, 눈에 들어간 경우 등).

증상 출현율 32%(구강·인두의 통증이나 위화감, 구역질, 구토, 기침, 눈 충혈이나 위화감·통증, 피부 부착 부위의 발적·붉은 반점 등).

【1986~2009년까지 24년간 파악한 소아(12세 이하)의 사고사례】

- 비눗방울액에 의한 75건 중,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.

【1986~2010년까지 25년간 파악한 고령자(65세 이상)의 사고사례】

- 비눗방울액에 의한 사례는 없었다.

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

※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.

